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00
----------	-----

2023년 2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남창진 의원(찬성자 1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화재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등을 추가하여 서울시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인용법명을 수정

함. (안 제1조)

- (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호~제8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2.12.1)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는 한편, 소방시설 지원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주택을 포함시켜 화재안전성을 강화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인용법명 변경 관련(안 제1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2.12.1)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려는 것인데,

[표]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제1조(목적)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0조----- -----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이는 기존의 인용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재예방’ 분야와 ‘소방시설’ 분야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규정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을 분리하여 제정하고,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의 확대 관련(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조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 현행은 주택의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을 노인거주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 거주 주택,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 개정안은 현행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에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지하층 거주 주택’, ‘소방차통행곤란 지역 위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하고 있음.

[표]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안 제3조제1항제5호~제8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 -----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1.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2. -----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3.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4. ----- -----
<u><신 설></u>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u><신 설></u>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u><신 설></u>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u><신 설></u>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9. ----- -----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의 경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가 신설되면서 ‘화재안

1)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제정)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취약자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거주하는 주택'도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 등이 서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 다음으로, '지하층³⁾ 거주 주택'은 건물 구조상 양방향 피난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대피로가 제한되고, 외부와 접하는 창문도 방범용 창살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 최근 5년간('18년~'22년) 발생한 주택화재 7,859건 중 지하층 주택화재가 1,584건(20%)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원 대상의 포함은 인명피해 감소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지하층 주택 화재발생 현황 (출처: 소방재난본부)

구 분	전체화재		일반주택 화재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합계	1층이상	지하층	합계	1층이상	지하
합 계	27,681	201	7,859	6,275	1,584	98	77	21
2022년	5,396	37	1,471	1,198	273	22	18	4
2021년	4,948	37	1,345	1,093	252	20	13	7
2020년	5,088	37	1,425	1,139	286	18	16	2
2019년	5,881	37	1,721	1,332	389	20	16	4
2018년	6,368	53	1,897	1,513	384	18	14	4

- 다음으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관련하여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은 서울시내 331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택은 약 137,13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② ~ ③ (생략)

3) 「건축법」 제2조(정의) 중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소방차통행 불가 및 곤란 지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684건이 발생하여 51명의 인명피해(사망 9명, 부상 42명)가 발생하였음.

[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 331개 지역 (2023.1.1.기준, 출처: 소방재난본부)

연도	구분	계	종로	중구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22	계	331	15	13	8	26	25	26	14	11	5	4	9	3	11	13	13	12	15	8	17	8	21	13	20	13	8
	불가	102	8	4	4	16	4	11	8	3	2	2	2	1	3	4	1	1	0	2	8	3	0	2	6	7	0
	곤란	229	7	9	4	10	21	15	6	8	3	2	7	2	8	9	12	11	15	6	9	5	21	11	14	6	8

[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인근 주택 현황 : 137,137세대(2023.1.1.기준, 출처: 소방재난본부)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37,137	1,829	3,381	884	14,510	1,950	62,055	2,903	4,990	1,019	1,496	1,211	2,058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1,118	1,009	3,431	3,097	1,245	640	2,878	1,508	15,995	2,558	2,216	835	2,321

[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소방차통행 불가 및 곤란 지역 화재발생 현황

(2022.9월 기준, 출처: 소방재난본부)

지역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계	684	51	9	42	4,040,702
주거지역	426 (62.2%)	37	7	30	620,103
상업지역	108 (15.8%)	2	0	2	119,930
공업지역	13 (1.9%)	0	0	0	51,063
전통시장	48 (7.0%)	10	1	9	3,078,448
야외	53 (7.7%)	1	1	0	148,471
기타	36 (5.3%)	1	0	1	22,687

- 이러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은 좁은 도로폭 및 장애물 설치, 고지대, 막다른 골목, 시장지역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만큼,
- 이들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소방시설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초기대응을 이끌어내어 화재대응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4) 접경 2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특성상 가연물이 상당히 많아 주변으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고 대형화재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접경 20m 이내의 주택’을 포함시켜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표] 화재예방 강화지구 현황 : 21개 지역 (2023. 1. 1.기준, 출처: 소방재난본부)

대상 \ 서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마포	송파
	21	10	3	1	3	1	1	1	1
시장지역	7	3	1	1	1	-	-	1	-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1	6	1	-	2	1	1	-	-
창고밀집지역	1	-	-	-	-	-	-	-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남궁역, 문성호, 박영한, 박칠성, 성흠제, 아이수루, 유정희, 이영실, 이원형, 이효원, 임만균, 최민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화재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등을 추가하여 서울시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인용법명을 수정함. (안 제1조)
- 나.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호~제8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호번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1조(목적)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0조-----</p> <p>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u>다문화가족지원법</u>」에 따른 <u>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u> 6. 「<u>건축법</u>」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u>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5.</u>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p>	<p><u>8.</u>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p> <p><u>9.</u> ----- -----</p>
---	---